

1. 개정이유

현행 「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」이 산업에서의 인공지능 활용 확대를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「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」으로 개정되어 시행 예정('26. 7. 1.)인 바,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정합성을 유지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시행규칙 제명을 「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」으로 변경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6. 4. 1. ~ 5. 11.) 예정

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대상 여부 사전검토 중

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”을 “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”으로 한다.

제1조 중 “「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」”을 “「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」”을 “「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」”으로, “전환 지원”을 “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”으로, “전환 전문회사”를 “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사업”을 “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”으로 한다.

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로”를 “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로”로, “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”를 “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”로 한다.

제4조의 제목 “(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)”을 “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”를 “전환 및 인공지능

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”로, “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”를 “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”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”를 “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”로, “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”를 “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”로 한다.

제5조의 제목 “(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)”을 “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 지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전환 우수기업 및 산업 디지털 전환”을 “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”으로, ““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””을 ““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”을 “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”을 “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”으로 한다.

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의 제목 “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”를 “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”로 한다.

별지 제2호서식 중 “「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」 제19조제1항”을 “「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」 제19조제1항”으로, 같은 서식 중 “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”를 “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”로 하며, 같은 서식 제2호 중 “「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

시행령」 제11조제1항”을 “「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」 제11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의 제목 “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”를 “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”로 한다.

별지 제3호서식 중 “「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」 제21조제2항”을 “「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」 제21조제2항”으로, 같은 서식 중 “전환 전문인력”을 “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”으로 하며, 같은 서식 제2호 중 “「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”을 “「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」 제12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4호서식 중 “전환”을 “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「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」 제21조제2항”을 “「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」 제21조제2항”으로, 같은 서식 중 “전환 전문인력”을 “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”으로 한다.

별지 제5호서식 중 “「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」 제27조제1항”을 “「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」 제27조제1항”으로 하고, 같은 서식 중 “「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」 제15조제2항”을 “「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령」 제15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별지 제6호서식 중 “「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」 제27조제1항”을 “「산

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」 제27조제1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는 곳이 아닙니다.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	14일
대표자	성명	전화번호	
신고 내용	회사명(한글)	업종	
	주소	전화번호	
	사업자등록번호	설립연월일 년 월 일	
	상시 종업원 수	명 (전문인력 보유: 명)	
	자본금(개인은 자산평가액)	연간 매출액 백만원 (전문 분야: 백만원)	
	사업자 형태 [] 개인 [] 법인 [] 기타 ()		
	전문 분야 [] 아래 해당 번호를 기입 1. 산업데이터를 수집하여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사업 2. 산업데이터 거래행위의 알선 및 이를 위한 정보의 수집·분석·제공하는 사업 3.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컨설팅 제공 사업 4. 산업데이터와 지능정보기술을 활용하려는 자에 대한 장비·소프트웨어 등 제공 사업 5. 산업데이터를 사용·수익할 수 있는 자를 대행하여 2번 또는 3번 또는 4번 사업을 활용할 수 있도록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		
주요 사업 실적	과제명	발주처	수행기간

「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」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 신고를 합니다.

년 월 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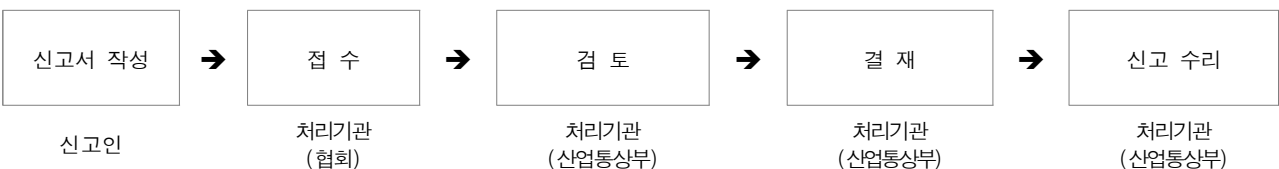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○○ 협회 귀하

- 첨부서류
-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운영규정
 - 「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」 제11조제1항 각 호의 사업 관련 수행인력, 시설 및 장비
 - 「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시행규칙」 제2조제2항에 따른 기준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

수수료
없음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</u> <u>시행규칙</u>	<u>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</u> <u>활용 촉진법 시행규칙</u>
제1조(목적) 이 규칙은 「<u>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</u>」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제2조(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) ① 「<u>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</u>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산업 디지털 <u>전환 지원</u> 전문회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<u>전환 전문회사</u>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영 제16조에 따른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. 1. ~ 3. (생략)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기준”이란 법 제11조제1항 각 호의 <u>산업</u>	제1조(목적) ----- 「<u>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</u>」 ----- -----. 제2조(<u>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</u>) ① 「<u>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</u>」----- ----- ----- <u>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</u> ----- <u>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지원 전문회사</u> ----- ----- -----. 1. ~ 3.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<u>어느</u>

관련 연평균 매출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.

③ (생략)

제3조(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) ① 「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11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2. (생략)

② (생략)

제4조(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의 양성 등) ① 영 제12조제2항에 따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.

1. 2. (생략)

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-----
-----.

③ (현행과 같음)

제3조(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 활용지원센터) ① -----

--- 산업디지털전환및인공지능 활용지원센터로 -----
----- 산업디지털전환및 인공지능활용지원센터 지정신청서-----

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(현행과 같음)

제4조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의 양성 등) ① -----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-----
-----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-----

-----.

1. 2. (현행과 같음)

② (생 략)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한 자를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.

제5조(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 지원)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매년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및 산업 디지털 전환에 기여한 자(이하 이 조에서 “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”이라 한다)를 선정할 수 있다.

② 산업통상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을 선정하려는 때에는 미리 그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여 공고해야 한다.

③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산업디지털전환우수기업등에 대하여 산업통상부

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-----
-----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서-----
---.

제5조(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 선정 지원) ① -----
-----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과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-----
----- “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”-----.

② -----
---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-----

-----.

③ -----
-----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우수기업등----

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대상자 선정 시 가점을 주는 우대조치 를 할 수 있다.	----- ----- -----.
--	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